

파주시국토이용관리위원회만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3
----------	-----

제출년월일 : 2001. 12. 6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재안이유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 되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 과태료 산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 되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 과태료 산정의 기준을 명시함 (안 제2조제2항)
- 나.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표준서식을 사용함 (안 제4조제1항)
- 다. 준용규정을 신설함 (안 제8조)

파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공시 되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는 시장이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제공하는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사용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처분사전통지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진술서를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때에는 법 제33조의2 제5항 규정에 따라 시장은 지체없이 목적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통보한다.

제6조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법 제33조의2 제6항 규정”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준용규정) 과태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지적과 940-4843
입안자	지 적 과 장	남 상 균
	토지관리담당	조 중 하
	담 당 자	정 영 옥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①(생략) ②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 중 토지가 격은 과태료 부과 당해 연도의 당해토지 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단위)	제2조(과태료부과기준)①(현행과 같음) ②----- ----- 다만,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공시 되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는 시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 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제공한 토지 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하는 지가를 사용한다.
제4조(의견진술)① 영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 견진술통지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 진술서에 의한다.	제4조(의견진술)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처분사전통지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진술서를 통지하여 의 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
제5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① (생략) ② 법 제33조의2 제5항에 의하여 시장 이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이의제기및법원통보)①(현행과같음) ② 과태료처분을 받은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때에는 법 제33조의2 제5항 규 정에 따라 시장은 지체없이 목적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통보한다.
제6조(강제징수)시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자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독 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신설)	제6조(강제징수)----- ----- 않을 때 에는 법제33조2의제6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준용규정) 과태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6호서식을 각 각 별지와 같이 한다.

처 분 사 전 통 지 서

문서번호

시 행 일

수 신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	성명(명칭)		
	주 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 적 근 거			
6. 의 견 제 출	기관명		부서명
	주 소		
	기 한	년 월 일까지	

파 주 시 장 (인)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의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제 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 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의견진술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또는인) 파주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